

# 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  
제 3379호  
2016. 11. 11.(금)

함께  
서울



**목 차**

◆ **자치법규**

**[입법예고]**

제2016-2243호 서울지하철 통합공사(가칭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... 2

## 자 치 법 규

### [입법예고]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-2243호

### 서울지하철 통합공사(가칭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지하철 통합공사(가칭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6년 11월 11일  
서울특별시장

###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 1~8호선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 공사의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 및 공공서비스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의 안전운행, 작업자의 안전, 새로운 교통체계의 마련 등을 위해 양공사를 서울지하철 통합공사(가칭)로 통합·정비하고, 동 공사의 자본금,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안전·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지하철 통합공사(가칭)를 설립하되, 자본금은 21조 5,000억원으로 함 (제1조 및 제3조)
- 나. 기존 조례에 규정된 사업의 범위 중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에 따른 업무시설·판매시설·환승시설·주택시설·생활편익시설·복지시설 등의 건설·공급 및 관리를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정하고 국내·외 도시철도관련 건설사업을 추가함 (제19조)
- 다. 서울지하철 통합공사(가칭)는 2017년 3월 1일에 출범하며, 이를 위해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설치·운영함 (부칙 제1조 및 4조)
- 라. 「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」, 「서울특별시도시철도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하고, 서울지하철 통합공사(가칭)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서울메트로,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모든 권리·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 (부칙 제2조 및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[참조 : 교통정책과(지하철혁신추진반),

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(서소문동) 서소문청사 1동 2층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하철혁신추진반(전화:02)2133-4163, FAX:02)2133-1446, E-mail : misu73@seoul.go.kr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

# 함께 서울

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

- 안전한 서울
-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
- 숨쉬는 서울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									
	람								